

제 호			
해양보호생물 []포획 []채취 []이식·가공·유통·보관 허가증			
성 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상 호(명칭)		전화번호	
주 소			
허 가 사 항			
대상지역			
대상종명			
수 량		허가기간	
목적·용도			
허가조건			
<p>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단서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[]포획 []채취 []이식·가공·유통·보관을 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width: 100px; height: 80px; 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text-align: center; color: red; line-height: 80px;"> 직인 </div>			
유 의 사 항			
1. 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. 2. 포획·채취등을 한 해양보호생물은 5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3.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.			

해양보호생물의 포획·채취등 신고내역

일 시	보호대상종	개 체 수	포획·채취등 장소	포획·채취등 방법	담당자 서명 또는 인